

한국 금융의 정치경제학 토론 자료

석우남

금융 기업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의 역할 – 감시와 자문
 - 임원진의 자유재량권 남용에 대한 감시자
 -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조언자
-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산업으로 분리되는 경향
 - 한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https://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120&no=104526>)
- 금융기업의 사외이사
 - 국가정책 및 법규에 관한 자문 역할 중요
 - 사업 관련 로비에 대한 수요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높음

퇴직 관료 사외이사

-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 조직과 관련한 환경적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서는 조직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해야 함(Pfeffer & Salancik (1978))
 - 기업은 전략적인 선택 즉 특정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기업 외부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생존할 수 있음
- 퇴직 관료 사외이사
 - 정부의 정책 및 법안과 관련한 조언자로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과/가치 증진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관료들이 속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전관예우 또는 현직 관료들의 career path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한 특혜 등과 관련될 수 있음

관련문헌

- Hillman (2005)

-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따른 장점

- 기업을 둘러싼 공공정책에 관한 자문 제공
 - 현직 관료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대화채널 제공
 -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제공
 - 정당성(legitimacy) 제공

- 실증분석을 통해

-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외이사들은 기업 (시장)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 규제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관료들의 사외이사 선임 비율이 높음
 -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외이사들과 기업 (시장)성과 간 양(+)의 관계는 규제산업 (telecommunication, biotechnology, "sin(tobacco, alcohol, and gambling)" industry)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관련문헌

- Lester et al. (2008)
 - 관료출신 인사들의 상이한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이 사외이사 임명에 미치는 영향
 - 사외이사 후보자들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Depth와 Breadth 개념 제시
 - Depth의 Proxy로 정부에서 근무한 기간 사용
 - Breadth의 Proxy로 각료/상원의원/하원의원의 3가지 카테고리 이용
 - 실증분석을 통해
 - 관료출신들은 정부 재직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더 높은 지위(각료>상원의원>하원의원)에서 퇴직한 경우 사외이사로 선임될 확률이 높음
- 정부 관료들이 재임 기간 동안 기업의 업무에 특혜를 주었거나 특정 산업에 지원을 해준데 따른 보상 측면에서(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확률이 증가하는) 사외이사 선임 확률이 높은지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이창민·정준영 (2017)

- 전직관료 및 금융공기업 출신 사외이사 선임의 목적
 - 기업의 성과나 가치 증진을 위한 로비스트 또는 조언자로서 활용
 - “낙하산 인사”
- 실증분석 결과
 - 사외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는 기업들에서 전직관료 및 금융공기업 출신 사외이사와 기업 성과/가치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
 - 국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전문성 및 독립성 측면의 문제 제기

이창민·정준영 (2017)

- 소유구조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 지배주주 외에 금융공기업(공공적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 이 기관투자자로 주주대열에 합류할 경우 독립적인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보다 투자기관 또는 투자기관과 관련있는 공공기관 퇴직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유인 존재
 - 기업의 감시나 자문 역할을 위한 사외이사 보다는 주주가 속한 기관 임원들이 퇴직 후 본인들의 career path를 위해 투자회사의 사외이사 자리를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기업 성과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2016년 기준 금융권에 속한 기업들의 1대 주주 현황 중

출처: KISVALUE Data, Nice 평가정보

기업명	그룹	1대주주명	지분(%)
(주)DGB금융지주	DGB금융그룹	국민연금공단	8.87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국민연금공단	9.55
(주)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	국민연금공단	9.72
(주)BNK금융지주	BNK금융	국민연금공단	12.4
(주)KB금융지주	KB금융	국민연금기금	9.85
한국캐피탈(주)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79.6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주)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87.59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획재정부	51.8
(주)우리은행	우리금융	예금보험공사	23.3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83.86
한국증권금융(주)		한국거래소	11.34
한마음금융(주)		한국자산관리공사	51.02
코레이트자산운용(주)	오션비홀딩스	한국토지신탁	48.43

사외이사 선임문제 개선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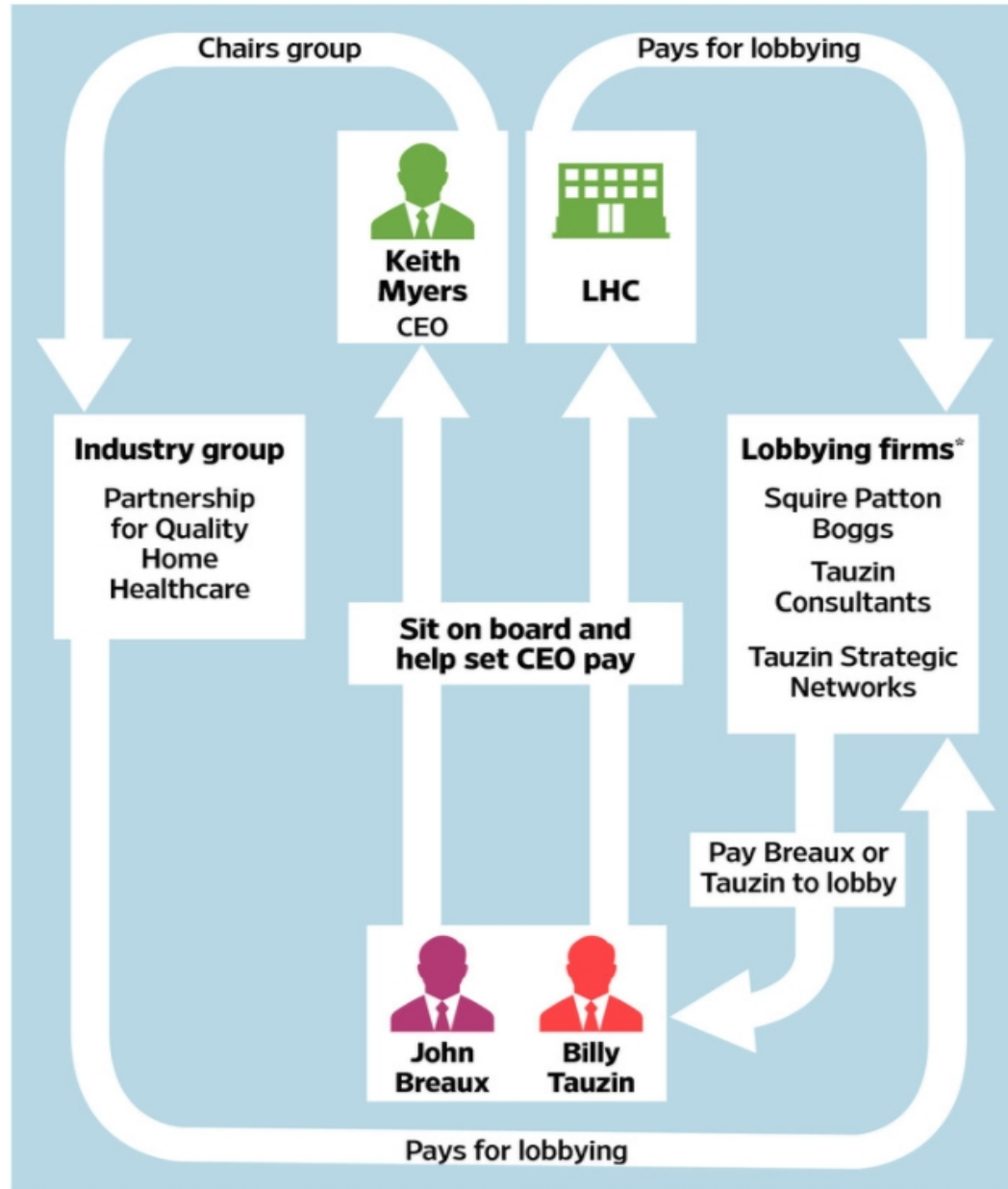
- 한국에서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제한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취업제한
 - 취업제한기관(https://www.peti.go.kr/index_ssl.html)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퇴직 후 취업 기관 자체를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인적/사회적 자본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또한 전문노동시장, 특히 사외이사 시장의 효율적인 선임을 저해할 수 있음

사외이사 선임문제 개선책

- 기관 자체보다는 이들의 퇴직 후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음
- 미국은 퇴직 관료들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https://www.oge.gov/Web/oge.nsf/Resources/After+Leaving+Government>\)](https://www.oge.gov/Web/oge.nsf/Resources/After+Leaving+Government)
 - 퇴직(고위)관료들은 퇴직 전 관련 연방 기관 또는 법원 소속 직원과 공식적인 업무를 위한 접촉 행위 금지(18 U.S.C. § 207(a), 207(c), 207(d))
 - 퇴직 관료들은 정부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사업 또는 교섭에 대한 비공개정보를 활용하는 행위 금지(18 U.S.C. § 207(b))

전직관료 이사의 독립성

- 로비활동으로 인한 이사의 독립성 결여
 -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의료서비스 기업인 LHC Group Inc.은 지난 2년간 CEO 보수를 90% 인상했으며, CEO가 회사 전용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수위원회 3명에는 LHC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전직 상원의원 John Breaux와 전직 하원의원 Billy Tauzin이 포함
 - 2010년 제정된 Dodd-Frank Act의 경우 보수위원회 전원이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이사들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또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함
 - John Breaux와 Billy Tauzin의 경우 LHC를 위한 로비활동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한편, LHC의 CEO인 Keith Myers가 설립하여 의장을 맡고 있는 협회에서도 대가를 수령함



전직관료 사외이사의 독립성

- 지배주주와 전직 관료 사외이사
 - 재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지배주주의 터널링이나 지대추구 행위에 대해 그룹 내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법안이 국회 안건으로 제시되거나, 관련 정책이 제안될 경우, 퇴직 관료 사외이사들은 로비스트로서의 역량을 이러한 법안이나 정책을 반대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이사회 안건에 대해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그들의 자유재량권 사용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Hillman, Amy. J. 2005. “Politicians on the board of directors: Do connections affect the bottom line? *Journal of Management*, 31: 464–481.
- Lester, Richard H., Amy Hillman, Asghar Zardkoohi and Albert A. Cannella Jr. 2008.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s Outside Director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1(5): 999-1013
- Pfeffer, Jeffrey & Gerald R. Salancik,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dependence perspective.” New York: Harper & Row.
- The Wall Street Journal. “Lobbyists as Directors Test Rules for Corporate Boards” Oct. 4, 2016
- <https://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120&no=104526>
- https://www.peti.go.kr/index_ssl.html
- <https://www.oge.gov/Web/oge.nsf/Resources/After+Leaving+Government>